

산업자원부고시 제2005 - 7호(12호)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안내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제5항, 동법시행령제7조의2제5항, 제22조제3항, 제27조의5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제9조제2항 등의 규정에 의한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5.1.21

산업자원부장관

● 개정 주요골자 안내

1. 부가가치세법의 개정에 따라 전기설계·감리용역 등의 대가를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산출도록 함
(제2조제7호·제8호)
2. 용역대가 기준이 되고 있는 공사비의 용어정의중 "자재대"를 "지급자재대 및 지입자재대"로 적용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발주자가 가격을 명시하지 아니한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 환산액을 공사비에 포함토록 하여 설계·감리업자 및 발주자의 혼란을 방지함(제2조제11호)
3. 현행 전기공사감리 용역대가는 정액적산방식으로 산출하였으나, 일부 전력시설물공사에 대해서는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토록 하고, 감리원은 총 공사기간동안 상주배치토록 배치기준을 강화함(제2조제14호, 제24조, 제25조제2항 및 제33조)
 -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연면적 10,000m² 이상의 건축물
 - 변압기·차단기·전선로 등 용량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교체공사
4. 발주자 또는 시행사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중단 또는 지연되는 경우에도 감리원을 추가 배치한 때에는 대가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새로운 기술개발 등으로 공사비를 절감한 경우 같은 대가를 감액 조정할 수 있도록 함(제15조제6호 및 제16조)
5. 정액적산방식의 적용에 있어 직접인건비를 종전에는 공사비 비율에 따른 등급별 책임감리원을 기준으로 한 노임단가로 산출하였으나, 이를 고급감리원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감리기간중 감리원의 교체 또는 등급변경이 된 경우에는 환산비를 적용하여 배치인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제26조제1항 전단·제7항)

6. 통합감리를 하는 경우 대가를 감액 조정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 상주감리원(책임·보조)의 배치 일정은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함(제32조)
7. PQ발주자(법 제14조의2제1항)가 시행하는 진행중인 공사에 대해서는 동절기, 공사휴지기간 등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최소 1인 이상의 감리원을 배치하여 적정 감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제33조제3항)
8. 발주자가 기본설계를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기본설계를 발주하지 아니하고 실시설계만 발주하는 경우에는 당해 실시설계 요율의 1.3배를 가산토록 함(별표 1 참고)
9. 정액적산방식을 적용하는 전기감리용역 대가를 평균 14% 인상함 (별표 2)
 $- 1.417X^{0.769}$ (X : 보통공종 공사비) $\Rightarrow 1.6192X^{0.769}$ (X : 보통공종공사비)

10. 송전·변전 및 배전설비 공사의 공종을 한 단계씩 상향조정함(별표 3)

구분	종전	개정
송전·변전설비	보통공종	복잡공종
배전설비	단순공종	보통공종(7,000V이상)

11. 이 요령은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감리원배치현황신고 시점)하고, 시행일 전에 협회에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배치현황신고를 한 감리용역에 대해서는 당해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종전 요령(산자부고시 제2004-7호)을 적용함(부칙)

● 세부 운영방법

1. 감리용역대가 산출방식 비교

구분	종전	개정
의미	예정 전기공사비를 기준으로 감리원수를 산정하고, 당해 감리원의 직접인건비, 제경비 등을 산출	공사기간중 실제 감리원의 배치인원수에 따라 당해 감리원의 직접인건비, 제경비 등을 산출
적용대상	설비정액기산방식 적용대상을 제외한 모든 공사. 다만, ③과 ④는 정액적산방식을 적용할 수 있음	①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② 연면적 10,000m ² 이상의 건축물 ③ 변압기·치단기·전선로 등 용량변경이 수반 되지 아니하는 교체공사 ④ 공사기간이 단기간인 건축물

구분	증전	개정
대가산출	(직접인건비+직접경비+제경비+기술료+ 추가입무비용)+부가가치세 ※ 직접인건비 : 고급감리원 기준 .. 1,6192X ^{0.769} 고급감리원 X 노임단가 25일	(직접인건비 배치일수+직접경비+제경비+기술료)+ 부가가치세 ※ 직접인건비 : 배치되는 감리원 등급기준 .. 배치되는 감리원수 X 등급별 노임단가 X 배치일수

2. 공동주택 등의 감리원 배치기준(별표 2의2관련)

구분	규모	정액직선기산방식	실비정액기산방식
공동주택	1세대 ~ 299세대	○	×
	300세대 ~ 799세대	×	○ (책임:1, 보조:0)
	800세대 ~ 1,199세대	×	○ (책임:1, 보조:0.5)
	1,200세대 ~ 1,599세대	×	○ (책임:1, 보조:1)
	1,600세대 ~ 1,999세대	×	○ (책임:1, 보조:1.5)
	2,000세대 ~ 2,399세대	×	○ (책임:1, 보조:2)
	(이후 생략)	(이후 생략)	(이후 생략)
건축물	1m ² ~ 9,999m ²	○	×
	10,000m ² ~ 29,999m ²	×	○ (책임:1, 보조:0)
	30,000m ² ~ 49,999m ²	×	○ (책임:1, 보조:0.5)
	50,000m ² ~ 69,999m ²	×	○ (책임:1, 보조:1)
	70,000m ² ~ 89,999m ²	×	○ (책임:1, 보조:1.5)
	90,000m ² ~ 109,999m ²	×	○ (책임:1, 보조:2)
	(이후 생략)	(이후 생략)	(이후 생략)
교체공사	변압기, 차단기, 전선로 등 전력시설물의 용량증설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교체공사 : 책임 및 보조 각각 1인		
단기간 건축공사	○ 건축물 1,000m ² 미만 공사기간 1월미만 :초급 1인 이상 ○ 건축물 3,000m ² 미만 공사기간 2월미만 :중급 1인 이상	정액직선방식 또는 실비정액기산방식 중 선택가능	

전기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알림

전기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되었기에 그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번호 : 산업자원부공고 제2005-65호
- 입법예고기간 : 2005.3.18 ~ 2005.4.6
- 공고부처 : 산업자원부 원자력산업과
- 전문참고 : 산업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제43차 국정과제회의(04.5.20)에서 확정된 "국가혁신체계정립을 위한 과학기술부 개편방안"과 "과학기술부와 산업자원부간 사업이관에 관한 합의"(04.10.16)에 따라 원자력발전소 2차계통 안전규제 업무를 과학기술부로 이관하고, 원자력발전소사후처리충당금 산정기준의 운영과정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골자

- 가. 전기설비에 대한 사용전 검사 및 정기검사 대상에서 원자력부문을 삭제(안 제31조제1항)
- 나. 전기설비에 대한 사용전 검사 및 정기검사의 시기에서 원자력부문을 삭제(안 별표 9, 안 별표 10)
- 다. 원자력발전소사후처리충당금 산정기준을 새로운 기업회계처리기준서와 부합하도록 산식을 개정하고, 추정비용 등 변수는 고시로 정하도록 함(안 별표 16)

산업자원부령 제 호

전기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전기사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법 제61조 및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획의 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하는 전기설비로 한다"를 "별표 7의 1과 같다"로 한다.

제32조 제1항 제3호를 삭제한다.

별표 7의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9의 제7호를 삭제하고, 제8호중 "제2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으로 한다.

별표10의제1호 나목을 삭제하고, 제2호 가목중 "기력·원자력·내연력·가스터빈·복합화력 및 수력발전소(비상예비발전설비를 제외한다)"를 "기력·내연력·가스터빈·복합화력 및 수력발전소(비상예비발전설비를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1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7의 1)

사용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전기설비 대상 (제31조 제1항 관련)

공사의 종류	인가를 요하는 것	신고를 요하는 것	공사의 종류	인가를 요하는 것	신고를 요하는 것
1. 전기사업용 발전소 가. 설치공사 (원자력발전소는 제외한다) 나. 변경공사 (원자력발전소는 제외한다) (1) 발전설비의 설치 (2) 발전설비의 변경공사 (가) 원동력설비 ① 수력설비 ② 땅 ④ 취수설비 ⑤ 침사지	출력 1만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소의 설치 출력 1만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설비의 설치 출력 1만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소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 댐의 설치 취수설비의 설치 침사지의 설치 또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설치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설비의 설치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땅의 설치 (2) 땅을 개조하는 것으로서 본체의 강도나 안정도 또는 흥수토의 용량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취수설비의 설치 (2) 개조하는 것으로서 통수용량 또는 취수탑의 강도의 변경을 수반한 것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침	④ 도수로 또는 방수로 및 개조 ④ 헤드탱크 또는 서어지탱크의 설치 ④ 수압관로 ④ 수차 ④ 양수식 발전소의 양수용펌프 ④ 저수지 또는 조정지의 설치	는 개조 도수로 또는 방수로의 설치·연장 및 개조 헤드탱크 또는 서어지탱크의 설치 수압관로의 설치 및 연장 수차의 설치 펌프의 설치 저수지 또는 조정지의 설치	사지의 설치 또는 개조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도수로 또는 방수로의 설치·연장 및 개조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헤드탱크 또는 서어지탱크의 설치 (2) 개조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 (가) 여수로의 용량 또는 여수로의 통수용량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 (나) 여수로 또는 여수로의 종류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 (다) 서어지탱크에 영향을 미치는 것 (라) 서어지탱크의 강도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수압관로의 설치 및 연장 (2) 개조하는 것으로서 관 본체의 강도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수차의 설치 (2) 대체 또는 개조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펌프의 설치 (2) 대체 또는 개조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저수지 또는 조정지의 설치 (2) 개조하는 것으로서 상시 만수위

공사의 종류	인가를 요하는 것	신고를 요하는 것	공사의 종류	인가를 요하는 것	신고를 요하는 것
② 기력 설비 ③ 증기터 빈 또는 왕복기 관	(1) 증기터빈 또는 왕복기관의 설치 (2) 증기터빈 또는 왕복기관의 개 조로서 20퍼센 트 이상의 출력 변경을 수반하 는 것	또는 최저수위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 의 증기터빈 또는 왕복기관의 설치 (2)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 의 증기터빈 또는 왕복기관의 개조 로서 20퍼센트 이상의 출력의 변경 을 수반하는 것 (3) 증기터빈을 개조하는 것으로서 다 음과 같은 것 (4) 차실·원판 또는 차축의 강도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 (5) 조속장지 또는 비상조속장지의 종류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 (6) 대체	종류변경을 수 반하는 것	④ 공해방 지설비	공해방지설비의 설치·개조 또는 폐 지하는 것. 다만, 개조하는 것은 공 해방지능력의 감 소를 수반하는 것 에 한한다.
④ 보일러	(1) 보일러의 설치 (2) 보일러를 개조 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 (a) 최고사용압력 또는 최고사용온 도의 20퍼센트 이상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 (b) 재열기의 최고 사용압력 또는 최고사용온도 의 20퍼센트 이 상의 변경을 수 반하는 것 (c) 드럼 또는 안 전밸브에 관한 것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 의 보일러의 설치 (2)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 의 보일러를 개조하는 것으로서 다 음과 같은 것 (3) 최고사용압력 또는 최고사용온도 의 20퍼센트 이상의 변경을 수반 하는 것 (4) 재열기의 최고사용압력 또는 최 고사용온도의 20퍼센트 이상의 변 경을 수반하는 것 (5) 드럼 또는 안전밸브에 관한 것 (6) 보일러를 개조하는 것으로서 20퍼 센트 이상의 가열면적의 변경을 수 반하는 것 (7) 대체 (8) 수리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 (9) 드럼 또는 안전밸브의 대체 (10) 드럼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 (11) 안전밸브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 는 것	증기밸브의 설치 또는 대체	⑤ 보조 설비	제31조제2항의 용 기 및 관의 설치 또는 대체
⑤ 연료연 소설비	(1) 연료연소설비의 설치 또는 대체 (2) 연료연소설비 를 개조하는 것 으로서 연료의 종류변경을 수반하는 것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 의 연료연소설비의 설치 또는 대체 (2)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 의 연료연소설비를 개조하는 것으 로서 연료의 종류변경을 수반하는 것	⑥ 가스터 빈설비 ⑦ 가스 터빈	가스터빈의 설치 또는 대체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 의 가스터빈의 설치 또는 대체 (2) 개조하는 것으로서 20퍼센트 이상 의 출력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 의 공기압축기의 설치 또는 대체 (2) 차실 또는 차축의 강도의 변경을 수반하는 개조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 의 연료연소설비의 설치 또는 대체 (2) 개조하는 것으로서 연료의 종류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 의 연료연소설비의 설치 또는 대체 (2) 차실 또는 차축의 강도의 변경을 수반하는 개조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 의 가스터빈의 설치 또는 대체 (2) 개조하는 것으로서 20퍼센트 이상 의 출력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 의 공기압축기의 설치 또는 대체 (2) 차실 또는 차축의 강도의 변경을 수반하는 개조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 의 연료연소설비의 설치 또는 대체 (2) 개조하는 것으로서 연료의 종류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

공사의 종류	인가를 요하는 것	신고를 요하는 것	공사의 종류	인가를 요하는 것	신고를 요하는 것
④ 보일러	(1) 보일러의 설치 (2) 보일러를 개조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 (가) 최고사용압력 또는 최고사용온도의 20퍼센트 이상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 (나) 재열기의 최고사용압력 또는 최고사용온도의 20퍼센트 이상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 (다) 드럼 또는 안전밸브에 관한 것	변경을 수반하는 것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보일러의 설치 (2)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보일러를 개조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 (가) 최고사용압력 또는 최고사용온도의 20퍼센트 이상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 (나) 재열기의 최고사용압력 또는 최고사용온도의 20퍼센트 이상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 (다) 드럼 또는 안전밸브에 관한 것 (3) 보일러를 개조하는 것으로서 20퍼센트 이상의 가열면적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 (4) 대체 (5) 수리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 (가) 드럼 또는 안전밸브의 대체 (나) 드럼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 (다) 안전밸브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	④ 보조 설비 ⑤ 내연력 설비 ⑥ 풍력 설비 (나) 발전기계 통설비(원자력발전소는 제외한다) ① 발전기	제31조제2항의 용기 및 관의 설치 또는 대체 내연기관의 설치 또는 대체 풍차의 설치 또는 대체 (나) 발전기계 통설비(원자력발전소는 제외한다) (1) 용량 1만킬로볼트암페어 이상의 발전기의 설치 또는 대체 (2) 용량 1만킬로볼트암페어 미만의 발전기의 개조로서 20퍼센트 이상의 전압 또는 용량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	(4) 대체 출력 1만킬로와트미만의 발전소로서 제31조제2항의 용기 및 관의 설치 또는 대체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내연기관의 설치 또는 대체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풍차의 설치 또는 대체
⑤ 공해방지설비	공해방지설비의 설치·개조 또는 폐지하는 것. 다만, 개조하는 것은 공해방지 처리능력의 감소를 수반하는 것에 한한다.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공해방지설비의 설치·개조 또는 폐지하는 것. 다만, 개조하는 것은 공해방지 처리능력의 감소를 수반하는 것에 한한다.	② 변압기 ③ 차단기	전압 20만볼트 이상의 변압기의 설치 또는 대체 전압 20만볼트 이상의 차단기의 설치 또는 대체	(1) 용량 1만킬로볼트암페어 미만의 발전기의 설치 또는 대체 전압 10만볼트 이상 20만볼트 미만의 변압기의 설치 또는 대체 전압 20만볼트 이상의 차단기의 설치 또는 대체
⑥ 증기밸브 ⑦ 증기터빈	증기밸브의 설치 또는 대체 (1) 증기터빈 또는 왕복기관의 설치 (2) 증기터빈 또는 왕복기관의 개조로서 20퍼센트 이상의 출력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증기밸브의 설치 또는 대체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증기터빈 또는 왕복기관의 설치 (2)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증기터빈 또는 왕복기관의 개조로서 20퍼센트 이상의 출력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 (3) 증기터빈을 개조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 (가) 차실·원판 또는 차축의 강도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 (나) 속도장치 또는 비상조속장치의 종류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	2. 전기사업용 변전소 가. 설치공사 나. 변경공사 (1) 변압기 (2) 차단기 3. 전기사업용 송전선로 가. 설치공사	전압 20만볼트 이상의 변전소의 설치 전압 20만볼트 미만의 변압기의 설치 또는 대체 전압 20만볼트 이상의 차단기의 설치 또는 대체 전압 20만볼트 미만의 변전소의 설치 전압 20만볼트 미만의 변압기의 설치 또는 대체 전압 20만볼트 이상의 차단기의 설치 또는 대체 전압 20만볼트 미만으로서 선로길	전압 20만볼트 미만의 변전소의 설치 전압 20만볼트 미만의 변압기의 설치 또는 대체 전압 20만볼트 이상의 차단기의 설치 또는 대체 전압 20만볼트 미만의 변전소의 설치 전압 20만볼트 미만의 변압기의 설치 또는 대체 전압 20만볼트 이상의 차단기의 설치 또는 대체 전압 20만볼트 미만으로서 선로길

공사의 종류	인가를 요하는 것	신고를 요하는 것
나. 변경공사 (1) 전선로	상의 송전선로의 설치 (2) 전압 20만볼트 미만으로서 선로길이 1킬로미터 이상의 지중송전선로의 설치	이 10킬로미터 이상의 송전선로의 설치 (2) 전압 20만볼트 미만으로서 선로길이 1킬로미터 이상의 지중송전선로의 설치
(2) 개폐소	전압 20만볼트 이상으로서 선로길이 5킬로미터 이상의 송전선로의 연장 또는 변경	전압 20만볼트 미만으로서 선로길이 10킬로미터 이상의 송전선로의 연장 또는 변경
4. 전기사업용 배전선로(공동구 또는 전력구에 한 한다)	전압 20만볼트 이상의 개폐소의 설치 또는 개조	전압 20만볼트 미만의 개폐소의 설치 또는 개조
가. 설치공사 (전력케이블 및 부대 설비)		전압 1만볼트 이상으로서 선로길이 0.5킬로미터 이상의 배전선로의 설치
나. 변경공사 (전력케이블 및 부대 설비)		전압 1만볼트 이상으로서 선로길이 0.5킬로미터 이상의 배전선로의 연장 또는 변경
5. 자가용 발전소	전기사업용 발전소와 동일	전기사업용 발전소와 동일. 다만, 용량 75킬로와트 미만의 비상용 예비발전설비는 제외한다.
6. 자가용 전기수용설비 (변전소 및 송전선로를 포함한다)		
가. 설치공사 (증설공사를 포함한다)	수전전압 20만볼트 이상의 수용설비의 설치	수전전압 20만볼트 미만의 수용설비의 설치. 다만, 설비용량 1,000킬로와트 미만의 수용설비의 구내배전설비는 제외한다.
나. 변경공사 ① 차단기	전압 20만볼트 이상의 차단기의 설치 또는 대체	고압 이상 수전용차단기와 특고압 이상 20만볼트 미만의 차단기의 설치 또는 대체

공사의 종류	인가를 요하는 것	신고를 요하는 것
2) 변압기	전압 20만볼트 이상의 변압기의 설치 또는 대체	특고압 이상 20만볼트 미만의 변압기의 설치 또는 대체
3) 전선로	전압 20만볼트 이상의 전선로의 설치 · 연장 또는 변경	고압 이상 20만볼트 미만의 전선로의 설치 · 연장 또는 변경

[별표 16] 원자력발전소사후처리총당금의 산정기준(제50조 관련)

구 분	산정기준
초기총당금	$\text{초기총당금} = \frac{\text{추정비용} \times (1 + \text{물가상승률})^{\frac{\text{물가변영기간}}{1 + \text{할인율}}} \times \frac{1}{\text{할인기간}}}{\text{당년도총당금}}$
당년도총당금	전기말 누계 총당금 이자율

비 고

1. 총당금은 총당단위 별로 산정 한다.

2. 총당단위 및 초기 총당금 계상시점

구 分	총당단위	초기 총당금 계상시점
원자력발전소철거비 총당금	호기	상업운전 개시년도
중·저준위폐기물처분비 총당금	200L드럼	폐기물 드럼 발생년도
사용후연료처분비 총당금	다발	원자연료 장전년도

3. 중 저준위 폐기물 처분비 총당금 및 사용후연료 처분비 총당금에 적용되는 할인기간은 제4호에 의한 고시 시행연도부터 1년 경과시마다 1년씩 차감한 기간으로 한다.

4. 총당단위당 추정비용, 물가상승율, 기간(물가반영 기간 및 할인기간), 할인율 및 이자율은 5년마다 재산정하여 고시로 정한다. 다만, 급격한 기술개발 등으로 총당금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될 경우 재산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5. 원자력발전사업자는 새로이 고시된 기준에 의한 총당금과 이전 기준에 의하여 계상한 총당금이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새로이 고시된 시점에 유효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입법예고 알림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되었기에 그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번호 : 해양수산부공공고 제2005-58호
- 입법예고기간 : 2005.3.25 ~ 2005.4.14
- 공고부처 :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개발과
- 전문참고 :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maf.go.kr/법령바다/입법예고)

1. 개정취지

신항만건설사업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자 지정에 따른 신항만건설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며, 아울러 사업계획변경의 경우 위임규정없이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 사업계획승인과 같이 법률로 근거를 마련하는 등 신항만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그밖에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규정에 대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개정내용

- 가. 신항만건설목적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신항만과 배후간선망을 연결하는 도로·철도의 명칭을 항만도로·항만철도로 구체화함으로서 신항개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함
- 나.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하여 민간투자사업으로 신항만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자 범위를 확대함
- 다. 신항만건설에 관한 사업계획변경의 경우에도 사업계획승인과 같이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법률로 상향명시 함
- 라. 신항만건설예정지 일부가 국가산업단지개발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신항만건설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근거를 마련함
- 마. 국토이용관리법이 폐지되어 관련규정(공공시설등의 설치의 협의 또는 승인)이 없어짐에 따라 관련 조문정리
- 바. 규제사무정비계획에 따라 신항만건설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을 준공전 사용하기 위해서는 신고 또는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신고만으로 사용가능도록 함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알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중개정령(안)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되었기에 그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번호 : 건설교통부공고 제2005-79호
- 입법예고기간 : 2005. 3. 17 ~ 2005. 4. 6
- 공고부처 : 건설교통부 주택국
- 전문참고 :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www.moct.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란)

1. 개정이유

주택재건축사업의 임대주택 건설의무 및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방식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증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2005. 3. 2.)함에 따라 이의시행을 위하여 재건축 임대 주택건설 의무비율 및 적용제외 대상 등을 정하고, 도시정비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의 규모별 건설비율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주택 재건축사업의 임대주택건설 의무비율을 증가된 용적률의 100분의 25로 하고 적용제외 대상을 기 존세대수가 50세대 미만이거나 용적률 증가가 30% 퍼센트 이하인 단지로 함
- 나. 건축물 층수제한 등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만큼의 용적률 완화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용적률 증가분의 100분의 10이상으로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 · 군수가 인정하는 범위로 임대주택 공 급비율을 완화함
- 다. 재건축 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자격은 무주택기간과 당해 사업지역에 거주한 기간이 각각 1년 이상인 자 중에서 오래된 순으로 하고,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재건축사업이 위치한 지역의 시세의 100분의 90이 하의 범위로 인수자가 정하도록 함
- 라. 소재 확인이 불가능한 자는 토지등소유자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등 동의자수 산정방법을 보완 · 개선함.
- 마. 투기과열지구내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조합설립 후 3년 이내에 사업시 행인가 신청이 없는 경우 등 사업 이 장기간지연되는 경우에는 조합원 명의변경제한의 적용에 있어 예외로 함.
- 바. 준공연도가 다른 소규모의 주택단지 여러 개가 일단의 지역에 집중 되어 있을 때 일부가 재건축 판정을 받지 못하더라도 그 일단의 지역전체를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재건축 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함
- 사. 준공후 10년 이상이 경과한 다세대 주택 및 다가구 단독주택이 당해 지역 안에 있는 건축률 수의 10분 의 3이상일 경우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서 당해 주거지의 주거환경개선과 단독주택지의 재건축 활성화를 도모함

에너지이용합리화법중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알림

에너지이용합리화법중 개정법률(안)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되었기에 그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번호 : 산업자원부공고 제2005-63호

□ 입법예고기간 : 2005. 3. 14 ~ 2005. 4. 4

□ 공고부처 : 산업자원부 에너지관리과

□ 전문참고 : 산업자원부 홈페이지(www.mocie.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유가의 급격한 변동과 기후변화에관한 국제연합기본협약에대한 교토의 정서 발효 등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에너지절약 기반을 강화하고, 에너지공급자와 에너지사용자의 에너지효율개선 노력을 지원함으로써, 에너지 저소비형 사회·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현재 국무총리 지시에 의해 시행 중인 '공공기관의 에너지절약 추진지침'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공공 기관의 범위를 규정함
- 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등 특정에너지사용기자재 지정·고시의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특정에너지사용기자재의 공공기관 사용의무화 및 민간에 대한 사용 권고 조항을 신설
- 다. 현재 고시에 의해 운영 중인 '건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
- 라.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동 법에 따른 금융·세제 등의 지원을 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을 우선 지원 할 수 있도록 함
- 마.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에너지사용자를 에너지관리대상사업자로 지정하고, 매 3년 주기로 에너지진단을 받도록 하며 에너지효율개선을 위해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 바. 목표에너지원단위의 조기 달성을 위한 금융·세제상의 지원과 보조금의 지급 및 기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사. 에너지 기술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근거조항을 신설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증개정령(안) 입법예고 알림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증개정령(안)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되었기에 그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번호 : 산업자원부공고 제2005-63호

□ 입법예고기간 : 2005. 3. 3 ~ 2005. 4. 6

□ 공고부처 : 건설교통부 주택국

□ 전문참고 :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uct.go.kr/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업 폐업신고제도 신설 등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2004.12.31. 공포, 법률 제7306호)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건설공사 직접시공계획의 통보 공사수주 후 일괄하도록 하는 부실건설 업체를 퇴출하기 위하여 30억 미만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발주자에게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는 경우 직접 시공할 공사와 하도급할 공사를 분리하여 통보토록 함
- 나. 건설업 폐업신고 방안 마련건설업 폐업신고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건설업자의 폐업신고서 서식 등 폐업신고 절차를 마련함
- 다.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요건 완화공공공사 낙찰률이 대부분 88%미만인 점을 감안하여 현재 공공공사중 88%미만 낙찰공사에 대하여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불을 허용하던 것을 82%미만 낙찰공사로 하향조정함
- 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 면제요건 완화수급인이 3천만원이상 하도급계약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하수급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나, 그간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4천만원이상 하도급계약시에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토록 그 요건을 완화함